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0. 20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윤성옥 의원(찬성자 7인)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10.10.14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운용중인 조례안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품의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은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87번지길 10-2(율량동 877)에 둔다.

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과 생활필수품(단, 생활필수품의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)
4. 비교 전시·판매를 위한 타 시·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(단,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(이하 “전시판매장” 이라 한다)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위치) 전시판매장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7번지에 둔다.</p>	<p>제2조(위치)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 이라 한다)은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87번지길 10-2(율량동 877)에 둔다.</p>
<p>제4조(전시·판매품목)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4조(전시·판매품목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3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과 최소한의 생필품 다만,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	<p>3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과 생활필수품(단, 생활필수품의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)</p>
<p>4. 비교 전시 판매를 위한 타 시·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. 다만,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함.</p>	<p>4. 비교 전시 판매를 위한 타 시·도 및 외국의 농어촌 특산품(단,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